2024년 05월 09일 12시 29분

주택

구 분	거래금액	요율한도	한도액
매매/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만원
	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만원
	2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9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5	-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6	-
	15억원 이상	1천분의 7	-
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만원
	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만원
	1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3	-
	6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천분의 4	-
	12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천분의 5	
	15억원 이상	1천분의 6	-

-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
-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, 보수 요율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상호 계약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거래금액의 계산은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에 따른다.

주택 이외

0.9%이내 상호 협의(시행규칙 제20조 제4항)

월세 거래금액 산정기준

- 합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: 거래금액 = (월 차임액 × 100) + 보증금
- 합산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: 거래금액 = (월 차임액 × 70) + 보증금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